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제정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13호)

2025. 9.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보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7
1. 기후대응기금 운용 개요	7

I. 제안경위

2024년 8월 12일 서왕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여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

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 대응보증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III. 검토의견

1.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생략) ③ <u>기획재정부장관은</u>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 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획재정부장관은</u> 기업의 <u>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u> <u>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u> <u>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u> <u>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u> <u>밖에</u> ----- ----- ----- -----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u>기술보증기금</u>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설>	
<신설>	

현행	개정안
④ ~ ⑥ (생략)	<u>신용보증기금</u>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3-14호, '23.3.6)로 제정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은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규정하고 있음¹⁾.

기후대응보증사업이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2025년의 기후대응보증사업

1)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9조(보증기관) 기금의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의 예산안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1,000억원과 400억원 규모로 편성됨.

[기후대응보증 사업 예산 편성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구분	기금	사업명	출연기관	예산액				
				2022	2023	2024	2025	계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보증 (신보출연)	신용보증기금	(금융성 기금 출연금) 450	(금융성 기금 출연금) 400	(사업 출연금) 340	(사업 출연금) 600 (금융성 기금 출연금) 400	2,190
		기후대응보증 (기보출연)	기술보증기금	(금융성 기금 출연금) 450	(사업 출연금) 400	(금융성 기금 출연금) 500	(사업 출연금) 400	1,750
계	-	2개 사업	2개 기관	900	800	840	1,400	3,940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국회에서는 일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사업을 기후대응기금에도 편성하면서 그 소관이 기후대응기금 관리운용주체인 기획재정부가 되었는데, 이는 해당 기금에 대한 출연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는 「신용보증기금법」²⁾과 「기술보증기금법」³⁾

2)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규정과 충돌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⁴⁾.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2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⁵⁾을 통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내 별도계정을 설치하였음.

다만, 「국가재정법」 제12조⁶⁾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기후대응보증사업이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받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기후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재원 편성 및 운용을 위해 기후대응 보증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은 타당한 방향으로 보임.

다만, 2025년 3월 18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⁷⁾되

4)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 기후대응기금: 계정신설, 법률간 충돌해소 등 기금운영 관련 개선 필요(기후대응기금추진단)」,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부처별II)』, 2021년 11월, pp. 48~51.

5)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9조(보증기관) 기금의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제20조(보증계정의 설치·관리 등) ① 보증기관은 기금의 보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증계정으로 설치된 기금의 보증사업은 소관 중앙관서에서 관리·감독한다.

6)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보증사업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의 법률적 근거는 확보된 상황이므로 개정안의 개정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기후대응기금 운용 개요8)

- (총괄) 다부처(16개)* 탄소중립 재정 프로그램, 기재부 총괄 운용·관리(법 제72조)
 - *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고용부, 농림부, 법무부, 해수부, 행안부, 금융위,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 ('23년) 기재부, 기상청, 소방청
 -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심의
 - * 위원장(기재부1차관), 관계부처 국장(기재·환경·산업·국토 4인) + 민간위원(5인)
- (편성) 기재부 기후대응전략과에서 기금(안)을 기재부 예산실에 작성·제출, 국회 기재위*에서 심의·의결 후 예결위 심의·의결
 - * 단,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각 상임위(환노위, 산자위, 국토위 등)에서 의견 제시 가능
- (집행) 환경부, 산업부 등 각 부처는 기금의 소관 세부사업 집행
- (관리) 한국환경공단(기후대응기금센터)이 수탁하여 기금 운용·관리* 지원
 - * 기금사업 선정·평가, 사업별 성과관리, 기금 집행관리, 기금회계·결산 등

<기후대응기금 부처별 편성 현황>

기관명	2023년		2024년(A)		2025년(B)		증감	
		비중(%)		비중(%)		비중(%)	(B-A)	%
총계	24,867	100	23,918	100	26,217	100	2,299	9.6
환경부	8,252	33.2	7,959	33.3	8,443	32.2	484	6.1
산업부	6,832	27.5	8,007	33.5	8,253	31.5	246	3.1
국토부	2,520	10.1	1,655	6.9	1,755	6.7	100	6.0
산림청	2,276	9.2	1,626	6.8	1,439	5.5	△187	△11.5
중기부	1,453	5.8	1,039	4.3	368	1.4	△671	△64.6
과기부	1,203	4.8	660	2.8	832	3.2	172	26.1
금융위	900	3.6	840	3.5	500	1.9	△340	△40.5
해수부	357	1.4	238	1.0	804	3.1	566	237.8
고용부	304	1.2	285	1.2	112	0.4	△173	△60.7
행안부	288	1.2	197	0.8	100	0.4	△97	△49.2
법무부	68	0.3	-	-	-	-	-	-
기재부*	347	1.4	1,342	5.6	3,017	11.5	1,675	124.8
농림부	49	0.2	49	0.2	51	0.2	2	4.1
기상청	9	0.0	9	0.0	8	0.0	△1	△11.1
소방청	5	0.0	1	0.0	-	-	△1	△100.0
새만금청	4	0.0	5	0.0	99	0.4	94	1,880.0
특허청	-	-	6	0.0	12	0.0	6	100.0
농진청	-	-	-	-	424	1.6	424	순증

* 여유자금, 공자기금, 전출금 '23년 296억원, '24년 1,289억원, '25년 2,964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8) 자료: 환경부